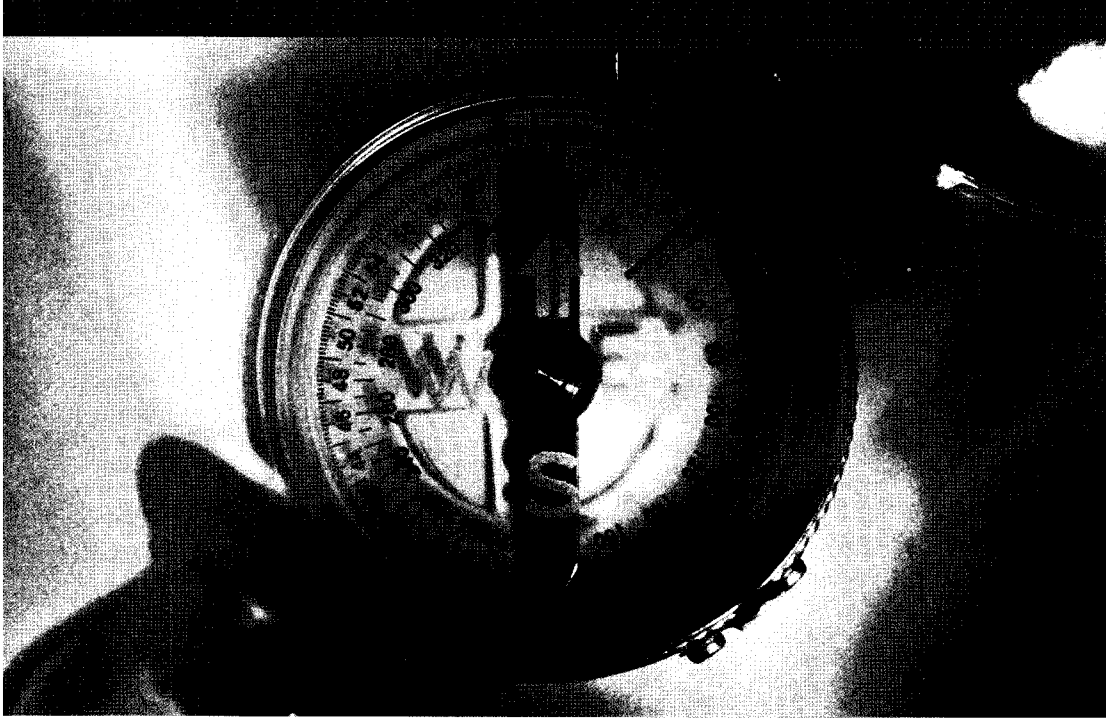


# 정책해설

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지침 전문



국무조정실

##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지침

### 1. 목적

○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,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함

### 2. 기본방향

-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통한 정부예산 절감
  - 에너지관련 정부 예산부담 최소화
  -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·관리하여 절약효과 제고
  -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절약 전담조직 운영의 활성화
-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선도하여 범국가적 절약 분

### 위기 제고

- 공공기관의 정책수행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충분히 반영
-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
-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수범사례 적극 홍보

### 3. 추진체계

- 국무조정실 :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총괄
  - 추진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
- 산업자원부 :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·보고
  -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시책 수립·시행
  - 각급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평가 및 보고
- 에너지관리공단 : 지침 이행실태 조사 및 평가업무 실무 지원

- 각 중앙행정기관, 시·도, 시·도교육청, 정부투자기관
- 소속·산하기관을 포함한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·시행
- 절약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(조례 및 규정) 정비
- 소속·산하기관 등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총괄조정 및 감독

#### 4. 대상기관

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(교육시설포함)
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자(자본금의 50% 이상)한 기관
-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출자(자본금의 50% 이상)회사

#### 5. 추진내용

##### 공통부문

##### 가.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

- 각 기관별 「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」 운영의 활성화
-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·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
-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
- ▷ 여러 부처가 입주하고 있는 합동청사의 경우,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총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
- 에너지절약 담당부서 지정·운영
-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 담당부서를 지정·운영 (담당부서는 총무과 또는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지정)

##### 나.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 설정·관리

- 2000년도 연료·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2003년까지 10%의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되, 1차년도(98~2000)중 5%를 초과한 절감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2차기간(2001~2003)중 5%를 절감목표로 설정하여 차등 추진(1차기간중 절감실

적은 2000년도 하반기 정부합동점검결과에 의거한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결과에 따름)

- 절감목표 설정시, 2000년도 에너지사용량 기준 이외에 기관·소속 건물별 에너지원단위(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) 지표 병행 사용
- 시설의 신축과 증·개축 및 에너지사용설비의 증가분을 반영한 매년도 절감목표를 기관별로 신축적으로 설정·추진

##### 다.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시책정비

- 에너지절약관련 각종 제도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정비

##### 라. 소속·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·감독

- 각 중앙행정기관, 시·도, 시·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소속·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에 대해 총괄조정 및 지도·감독 의무화
-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이상 지도·점검 의무화
- 소속·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분석·평가 및 개선조치
- 에너지절약관련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

##### 건설부문

##### 가.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을 통한 에너지절약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

- 각 중앙행정기관, 시·도, 시·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건축물 연면적이 3,000㎡ 이상인 본청, 소속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을 통한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화 및 추진계획 수립·시행
- 타당성 검토결과,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기관은 에너지절약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, 사업성이 없는 기관은 자체예산에 반영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단계적 개체
- 소속건물들의 단위건물규모가 작아 ESCO사업 경제성이 낮은 기관은 여러 소속건물들을 통합하여 종합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

##### 나. 공공건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

- 모든 공공건물 신축(증·개축 포함)시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「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(산업



# 정책해설

##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지침 전문

자원부고시)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사용 의무화

### 다. 에너지관리진단의 내실화

-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공공건물은 필요한 경우,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에너지관리용역진단을 의뢰하여 에너지 손실요인과 개선방안을 발굴
  - 에너지관리공단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진단을 신청할 경우, 우선적으로 진단 실시
  -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사업 또는 자체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개선 추진

### 라.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 이용

- 모든 공공기관은 전체 사용설비의 역률을 90%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의 「콘덴서」를 사용설비별로 설치
- 건물내 무인 자동판매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「전원 차단용 타이머」를 부착하여 근무종료 등 사용이 없을 때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조치
-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설치 등을 통한 전력피크부하 감소
- 모든 공공기관의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
  - 컴퓨터, 복사기, 팩시밀리 등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, 「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」(산업자원부고시)에 따라,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의무화
  - 엘리베이터 격층운행 등 합리적 운행
    - 3층 이하 운행금지(다만, 환자·장애자·화물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)
    -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승강기 제한운행
    - 10층 이상 건물은 일정층 이상·이하로 구분하여 승강기 운행 등
  - 빙축열·가스흡수식 냉방기 설치 또는 지역냉방 도입을 통한 전력절감 도모
  -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냉·난방온도 관리
    - 난방온도: 18~20℃, 냉방온도: 26~28℃

### 마. 물 절약 추진을 통한 에너지절약 가속화 도모

- 신축건물에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의무화
- 신축(증·개축 포함)하는 모든 공공건물의 변기 및 수도

꼭지는 수도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로 설치

- ▷ 수도법 제11조2의 규정에 따라 변기는 '98. 3부터, 수도꼭지 및 샤워기는 2000. 1부터 절수형으로 설치 의무화
  - 기존건물에 대한 물 절약사업 추진
    -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진단 등을 통해 변기 및 수도꼭지에 절수기 설치, 노후된 옥내 수도관 교체, 가능한 경우 한번 사용한 물을 처리하여 중수로 재이용 등 물 절약사업 추진

### 바. 대체에너지 이용·보급 활성화 추진

- 모든 공공건물 신축(증·개축 포함)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예산을 반영하여 대체에너지사용을 의무화

## 수송부문

### 가. 경차보급 활성화 촉진

-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·제도정비의 지속 추진
  - 통행료 감면범위 확대(고속도로 → 전국 유료도로) 및 책임·종합보험료 인하 조정 유도
  - 10부제 등 차량운행억제 조치 완화
  -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경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추진
    - 관내 민영주차장에도 경차 지원 권고
    - 각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신규 구입시,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최대 50%까지 경차 구매를 유도
      -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반영
      - 소속·산하기관에 대해 경차 우선구매 권고
    - 각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일정면 이상의 경차 전용주차장 설치
      -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도 경차우선 주차장 설치 권고

### 나.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

- 기관별 특성에 맞는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을 강구·시행
  - 부제운행(10부제, 5부제, 주 1회 휴차제 등)
  - 승용차 함께 타기 활성화
  - 통근버스 확대운영, 인근 기관과 통근버스 카풀제 운영

## 등 추진

- 부제은행,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승용차 운행자제 기업 및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- 교통유발부담금 경감,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

## 다. 자전거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이용 촉진

- 공공기관 및 지하철역 주변, 공영주차장 등에 자전거주차시설 확대 설치
- 지역 특성에 맞게 검토 추진
- 각급 도로의 신설·확장·재정비시 자전거도로 확보

## 교육·홍보부문

### 가. 각종 교육과정 등에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포함

- 각종 공무원교육시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과목의 반영
- 구내방송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실천교육 강화

### 나.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홍보의 강화

- 각 기관별 홍보·출판물에 에너지절약 내용 포함
-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, 전광판, 현수막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 실시
- 환경·교통 등 정부시책 홍보시 에너지절약내용 연계 추진

## 6. 행정사항

### 가. 각 기관별 에너지절약추진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

- 각 공공기관은 이 지침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
- 다만, 정부 중앙·과천·대전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의 건물부분·승용차은행 자제방안 등은 행정자치부가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, 필요시 입주기관 총무부서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
-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연도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고, 미비점을 개선·보완
- 매년 반기별로 에너지 소비량 및 절약실적을 자체 점검 및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차기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에

## 반영하여 추진

### 나.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(보고)

- 각 중앙행정기관장, 시·도의 장, 시·도교육청의 장 및 정부투자기관장은 자체,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추진계획 및 실적(평가)을 종합하여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(보고)

- 제출대상기관 : 각 중앙행정기관(가23~가86), 시·도(나01~나18), 시·도교육청(다01~다18),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(마01~마33)

①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중 연면적 10,000㎡ 이상인 건물까지의 내용을 취합하여 직접 보고. 다만, 초·중·고교 및 군부대는 보고대상에서 제외

②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은 청사관리기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실적·계획을 제외한 기타 사항과 소속·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·계획을 취합 보고

- 제출시기 : 당해년도 에너지절약추진계획 및 전년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(평가)을 당해년도 1월말까지

- 소속·산하기관 등의 에너지절약추진계획 및 실적(평가)은 위의 제출대상기관의 장이 종합 관리

### 다.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 및 수범사례 발굴 확산

- 국무조정실은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,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

- 점검대상 : 각 중앙행정기관, 시·도, 시·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과 그 소속·산하기관

- 산업자원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, 시·도, 시·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종합평가

- 평가결과는 「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」에 보고
- 매년 평가결과와 수범사례집을 발간하여 각 공공기관에 배부

### 라. 기타

-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국무총리지시 제2001-5호('01.1.30)는 폐지